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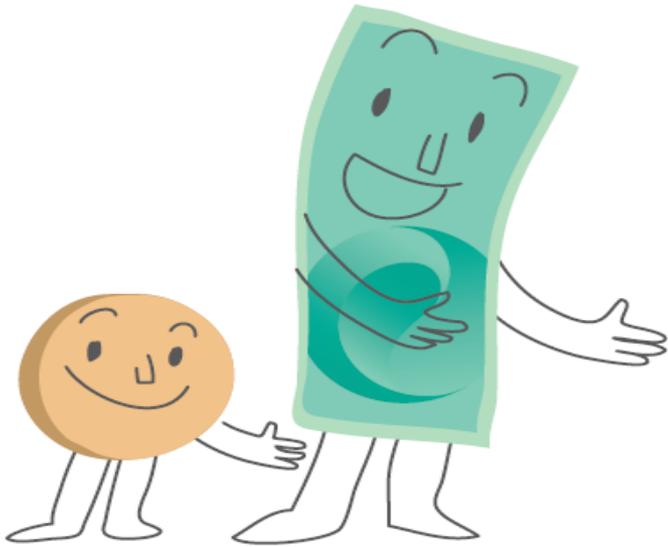
A light blue world map is centered on a dark blue background with a grid pattern. The map shows the outlines of the continents.

EU 지식재산권 정책 동향

2018.5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사관
박진환 특허관

차 례



I. 현행 유럽특허 제도

II. EU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1

현행 유럽특허 제도

지재권 집약산업이 EU에 미치는 영향

구분	주요 내용
EU 고용	직접 고용(약 60백만, 27.8%) 직간접 고용(약 82백만, 38.1%)
EU GDP 기여도	5조 6640억 EUR, 전체 GDP의 42% 기여
EU 교역	EU 수입의 86%, 수출의 93%가 지재권 집약산업 제품 EU 전체 무역적자 420억 EUR, 지재권 집약산업 960억 EUR 흑자
EU 임금	지재권 집약산업 종사자의 주당 평균 임금 776 EUR - 비 지재권 집약산업(530 EUR)에 비해 46% 높음

※ 지재권 집약산업 정의 : 타 지재권 활용산업에 비해 종업원당 지재권 활용도가 평균보다 높은 산업(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지리적표시(GI), 식물신품종 등 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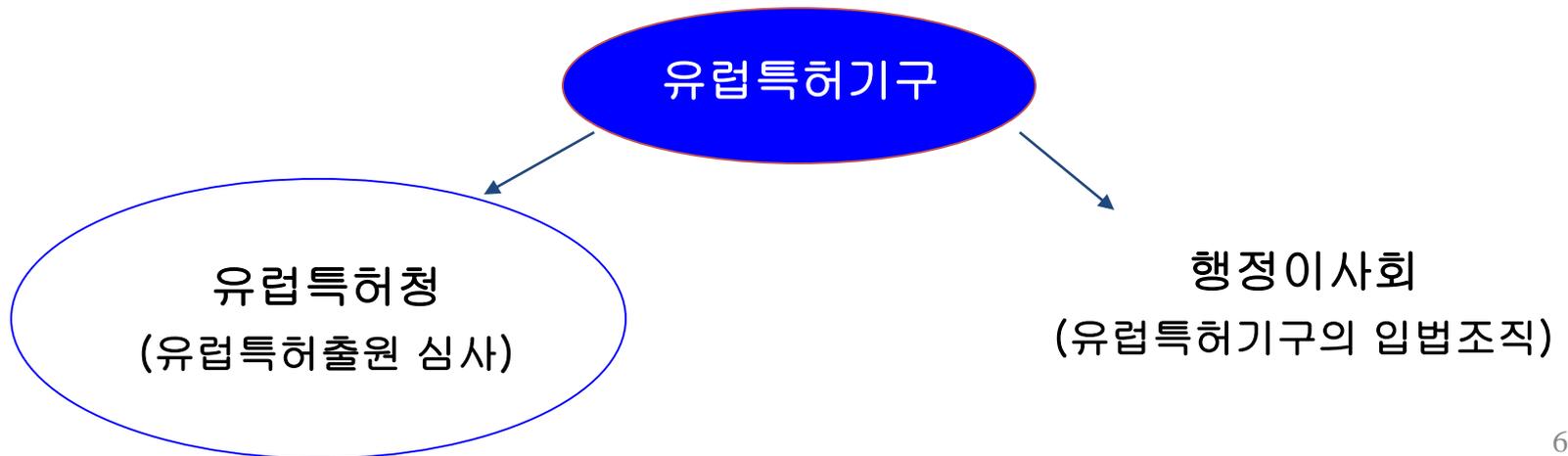
※ 출처 : EPO & EUIPO 보고서(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nsive industries and economic performance in the EU), '16.10.26

EU의 지재권 시스템

- EU는 지난 수십 년간 유럽의 경제성장을 위해 통합된 지재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 특히, 상표, 디자인 등 일부 지재권 분야에서는 EU 전역에 적용되는 통합시스템이 이미 작동
 - 유럽특허, EU 상표, EU 공동체디자인제도 등

유럽특허기구(European Patent Organization)

- ❖ 1973년 뮌헨에서 체결된 **유럽특허협약**(EPC, European Patent Convention)에 의하여 설립
- ❖ Belgium, France, Germany, Luxembourg, the Netherlands, Switzerland and the United Kingdom 7개국을 최초 회원국으로 하여 1977년에 발족하였으며, 현재는 38개국이 가입
- ❖ 발명보호를 업무로 하고 있으며, 동 기구의 **Administrative Council**은 입법 기능을, **European Patent Office**는 특허심사 등의 행정 기능을 각각 담당



유럽특허협약(EPC) 회원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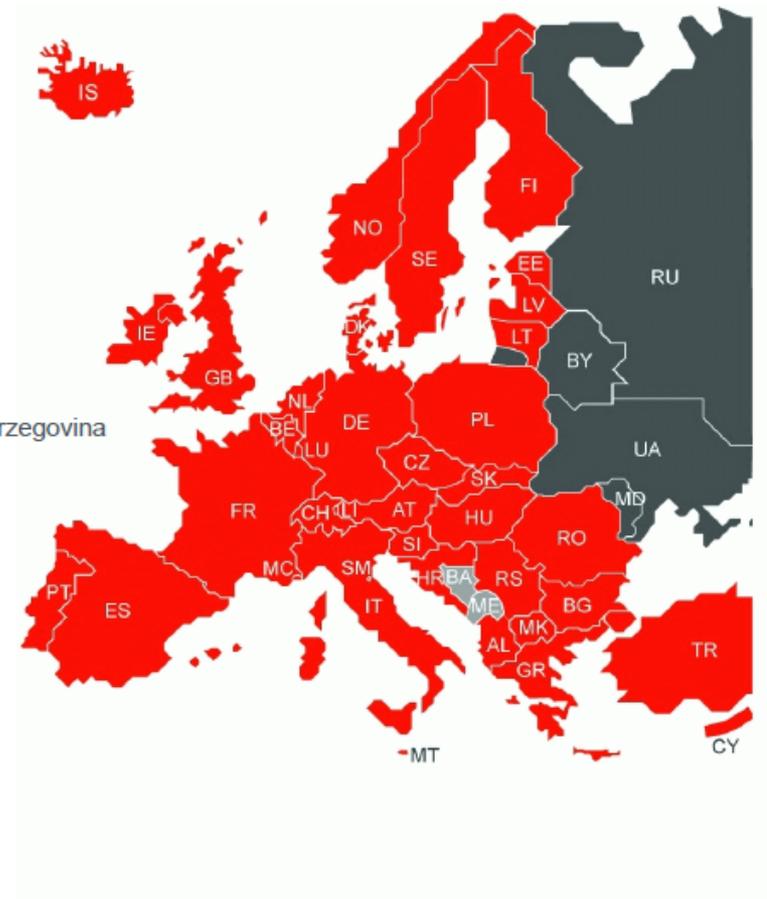
Member States (38)

AL	Albania	RO	Romania
AT	Austria	RS	Serbia
BE	Belgium	SE	Sweden
BG	Bulgaria	SI	Slovenia
CH	Switzerland	SK	Slovakia
CY	Cyprus	SM	San Marino
CZ	Czech Republic	TR	Turkey

DE	Germany
DK	Denmark
EE	Estonia
ES	Spain
FI	Finland
FR	France
GB	United Kingdom
GR	Greece
HR	Croatia
HU	Hungary
IE	Ireland
IS	Iceland
IT	Italy
LI	Liechtenstein
LT	Lithuania
LU	Luxembourg
LV	Latvia
MC	Monaco
MK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MT	Malta
NL	Netherlands
NO	Norway
PL	Poland
PT	Portugal

Extension states (2)

BA	Bosnia and Herzegovina
ME	Montenegro



유럽연합(EU, 28개국) & 유럽특허협약(EPC)





유럽특허청(EPO)

*Headquarters Munich
PschorrHöfe*



Branch at The Hague



*Headquarters Munich
Isar building*



*Brussels
Bureau*



Vienna sub-office



Berlin sub-office

유럽 지식재산청(EUIPO)

- EU Trademark & Design(Alicante, Spain)



유럽특허청(EPO) 개요

- 1977년 유럽특허청 설립
- 법적근거 : European Patent Convention
- 38 Member States : 6억명 거주(모든 EU MS 포함)
- 7,000여명 근무(35개 국가), 유럽에서 2번째로 규모가 큰 공공기관
- 심사관 : 4,400명
- 독립채산제 : 특허수수료로 운영(2018년 예산 23억 EUR)

유럽특허청의 출원 현황(2017 기준)

- 2017년 유럽특허청 출원(filing)건수 : 310,784건(전년 대비 4.4% 증가)
 - * 심사청구(application) : 165,590건(전년(159,316건) 대비 3.9% 증가)
- EPO 38개 회원국 출원(47%), 비회원국 출원(53%)
- 국가별 출원 : 미(26%), 독(15%), 일(13%), 프(6%), 중(5%), 한국(4%, 8위)
 - * 출원 증가율 : 중국 강세(16년 대비 16.6% 증가), 상위 10개국중 한국만 감소(8.2% 감소)
- 기업별 : Huawei > Siemens > LG > Samsung > Qualcomm > Royal Philips
- 기술분야 : Medical > Digital communication > Computer > Electrical machinery

유럽특허청의 등록 현황(2017 기준)

- 2017년 유럽특허청 등록(granting) 건수 : 105,635건(전년 대비 10.1% 증가)
- 국가별 등록 : 미(24%), 독(18%), 일(17%), 프(7%), 한국(4%)
 - * 증가율 : 한국 38.2%로 상위 10개국중 가장 높음(중국 26.5%, 일본 14.7%)
- 기업별 : LG > Robert Bosch > Samsung > Huawei > Qualcomm

유럽에서 특허를 취득하는 방법

1. **개별출원 : 유럽 각 국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방법**
2. **유럽특허청(EPO)에 출원하는 방법**
 - EPO의 지정언어(영어, 독어, 불어)로 출원하여 특허결정을 받고 EPC 각 회원국(38개국)의 지정언어로 번역문을 제출하고 개별국가의 특허를 선택적으로 취득(bundle of the independent national patent rights)
3.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
 -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국제출원을 하고 국내단계를 거쳐 각 회원국의 특허를 획득

출원방법에 따른 유럽특허취득 비교

출원방법	개 요	출원/심사/등록
개별특허	개별국가에 출원서류를 제출, 개별국가 특허청이 심사, 등록	각 국가별 절차에 따라 진행
국제특허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출원서류 제출. 지정관청이 특허 심사, 등록	출원절차 통합. 심사, 등록은 국가별 절차
유럽특허	EPO에 출원 및 심사. 등록은 각 회원국별로 진행	출원과 심사 통합. 등록은 국가별 절차에 따라 진행

현행 유럽특허(EU Patent) 제도

- 1973년 유럽특허협약(EPC, European Patent Convention)이 체결되어 1977년 유럽특허청(EPO)이 설립
- 1978년부터 EPO에서 통일된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 시행
- 유럽특허청에 하나의 출원서류를 제출, EPO는 개별 EPC 회원국을 대신하여 특허성(patentability)을 심사
- 유럽특허가 부여되면 출원시 지정하였던 EPC 회원국에 특허를 등록
- 유럽특허는 출원과 심사단계까지 통합된 제도

고비용 저효율의 유럽특허 획득절차

EPC에 의거하여 EPO를 통해 취득하게 되는 유럽특허는

- 유럽연합(EU)에 모두 적용되는 “역내 특허(regional patent)”가 아니고
- 유럽특허 출원서에 지정된 국가별로 각각 등록되는 『1국 1특허 원칙』에 입각한 **다수의 개별국가 특허(bundle patent)**가 됨
- 등록된 개별국가의 특허별로 각각의 특허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많은 EPC 회원국들은 명세서, 청구항에 대한 자국어 번역을 등록의 전제조건으로 요구

고비용의 주범은?

- EU는 **28개 회원국**과 **24개의 공식언어**로 구성
- 번역 예산으로만 매년 3억 3천만 유로(약 5조원)를 사용
(EU 회원국의 전체 국민수로 나누면 **1인당 2유로** 꼴)
- 13개 EU 회원국을 지정하는 **유럽특허는 평균 20,000유로**가 드는데
이 중 약 **60%인 14,000 유로**가 **번역비용**
- **미국에 비해 약 10배의 고가**이며 이러한 비용부담 때문에
유럽특허의 취득은 평균 3-4개국으로 제한되고 있는 실정

과다한 특허획득 비용

특허획득 비용(Euro) 평균치 비교 (출원-등록까지)

EPO	24,100
미국	10,250
일본	5,4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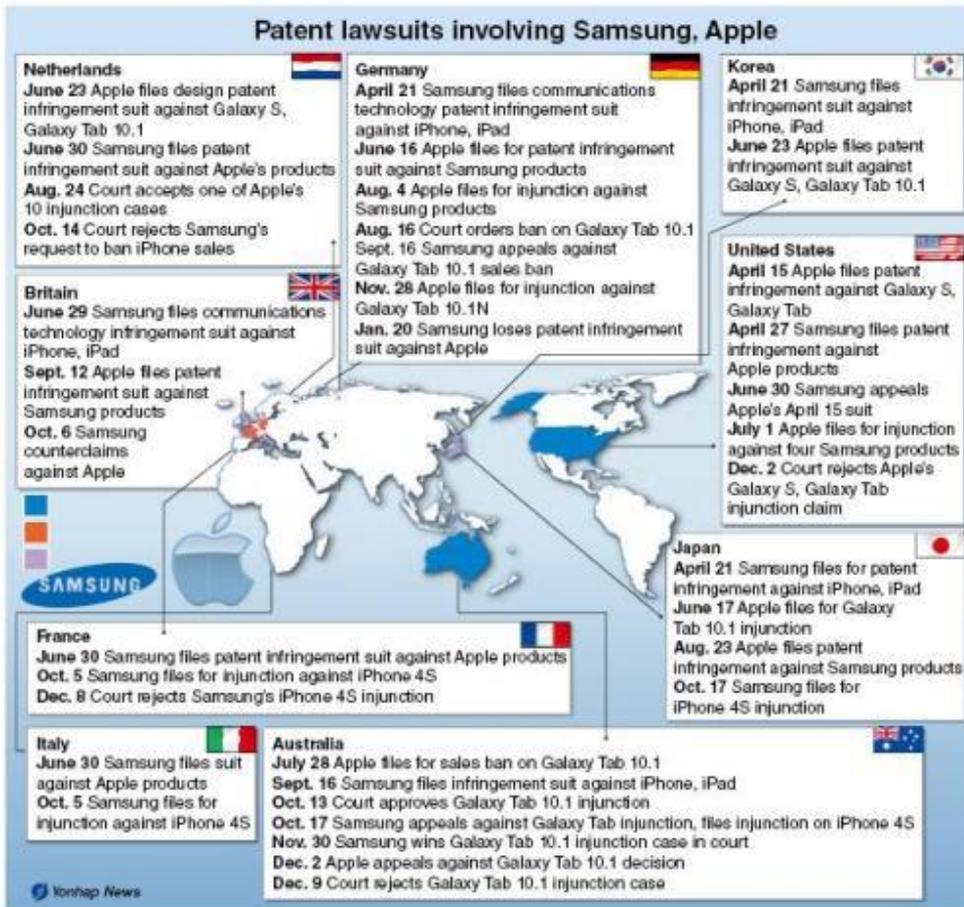
❖ 2010 & 2011 EU 집행위 보고서

- 50,000여건의 유럽특허 중 1,000건만이 27개 전체 EU 회원국에서 등록
- 50,000여건의 유럽특허 중 25,000여건이 3개 EU 회원국에서 등록
- 유럽특허는 평균적으로 3-4개 회원국에서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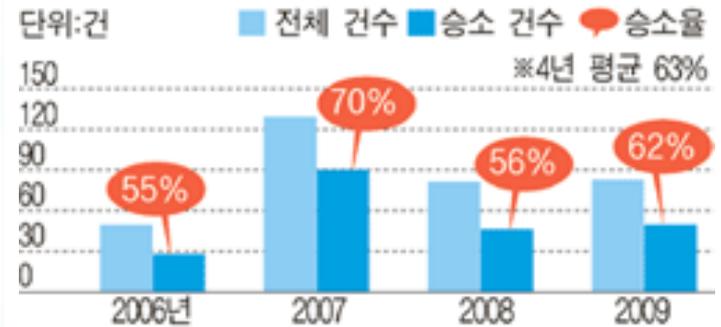
현재의 유럽 특허소송

- ❖ 오직 개별 국가의 법원만이 자국의 유럽특허에 대한 침해와 무효에 대해 다룰 수 있음 (No EPC invalidation procedure)
 - 동일한 유럽특허의 침해에 대하여,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점
 - 동일한 특허에 대한 판결이라도 1국의 판결은 다른 국가에서 유효하지 않음
- ❖ 다수의 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문제점 등이 발생
 - 소송 및 변호사
 - 판사들의 전문성(특허법에 대한 이해, 최신기술 이해도) 차이
 - 자신에게 유리한 국가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Forum shopp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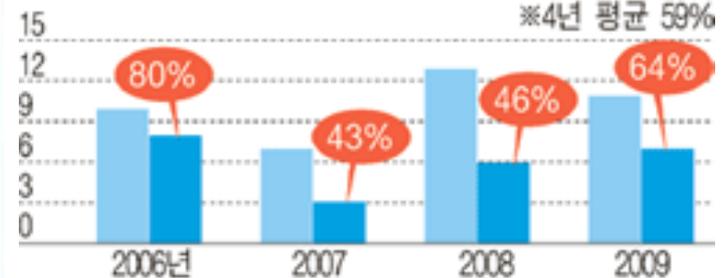
동시다발적인 특허소송과 포럼쇼핑



뒤셀도르프 법원 원고 승소율



뒤셀도르프 법원 가처분신청 이길 확률



자료:로펌 피메간(Fimegan)

특허소송제도의 회원국간 조화수준

- 특허의 소유권, 양도, 침해 및 무효 관련분쟁은 회원국 법원의 관할
- **특허무효**의 판단법리는 회원국들간 **상당 부분 조화**된 상태
- 특허침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공동 소유권, 손해배상 등은 회원국들간 상이
- A국 법원의 판결은 B국 법원에 구속되지 않음
- 일반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국가의 변호사 선임 필요

2

**EU 단일특허,
통합특허법원**

EU 특허통합 논의 경과

- **1975:** 9개 국가들이 공동체특허조약(Community Patent Convention)에 합의, 조약의 비준에는 실패
 - 벨기에, 덴마크, 이태리, 프랑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영국, 독일
- **1989:** 12개 회원국들이 수정 공동체특허협정에 합의, 일부 국가에서만 비준
 - 독일,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영국
- **2000. 8월:** 공동체 특허를 EU 집행위가 공식 제안
- **2010.12월:** EU 회원국들은 언어문제에 대한 만장일치 논의가 무의미함을 주장하면서 EU 집행위가 "강화된 협력절차(Enhanced cooperation)" 발동 요구

EU 특허통합 논의 경과

- ✓ 2011. 2, 25개 회원국 참여신청
 - [EU 이사회](#)와 [유럽 의회](#) 승인
 - 스페인, 이태리는 언어에 관한 불만으로 불참
- ✓ 이후 통합특허법원의 중앙법원(Central Division) 유치를 놓고 영국, 독일, 프랑스가 치열한 삼파전 전개
- ✓ 2012. 6, [EU 정상회의\(European Council\)](#)에서 중앙법원을 파리, 런던, 뮌헨에 분산 설치 합의
- ✓ 2012.12.17, 최종 서명



특허제도 통합관련 제도적 장치

- 강화된 협력절차에 의한 단일특허(Unitary Patent) 규정
 - 단일특허 보호 규정(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unitary patent protection)
 - 번역관련 규정(Regulation of the Council on translation arrangements)
- 통합특허법원 조약
 - Agreement on Unified Patent Court (EU 회원국중 참여국간 국제조약)
- 유럽특허청 실행 규칙(Implementing rules)

EU 단일특허 (Unitary Patent)

EU 단일특허란?

- **단일효력을 갖는 유럽특허**(European patent with unitary effect)
 - EPO에 출원하여 등록결정을 받고 EPO에 등록하면 EU 회원국(이탈리아, 스페인, 크로아티아 제외 25개국)에 효력이 미치는 특허
 - 단일특허(Unitary patent)로 약칭되며, 기존 EU특허(EU patent)와는 구별
 - 단일특허는 기존의 유럽특허, 회원국 특허와 병존하며 대체하는 것은 아님
- 25개 회원국에 동일한 청구범위를 가진 유럽특허는 EPO의 '단일특허 등록부' (Register for unitary patent protection)에 등록되면 단일효력을 갖게 됨
 - EPO의 심사를 거쳐 **등록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EU 단일특허로 등록할지 혹은 종래의 유럽특허로 등록할지 여부를 선택해야 함

현행 vs 도입예정 특허제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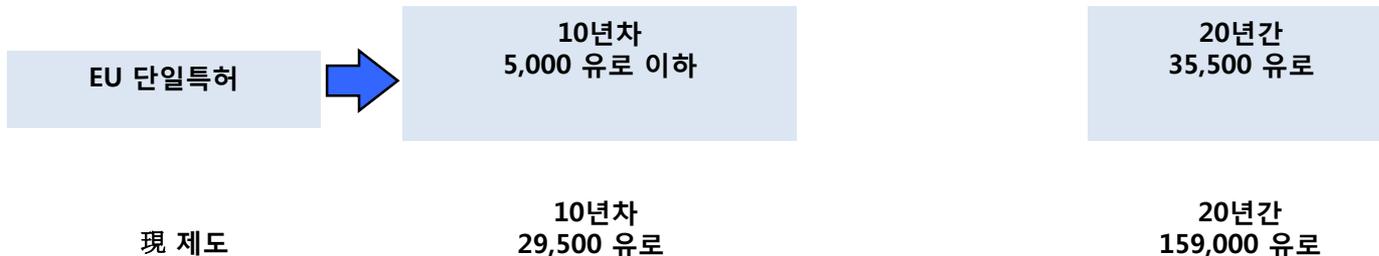
	현행 제도	새로운 제도
명칭	유럽특허 (European Patent)	EU특허 (EU Patent)
대상국	유럽특허조약(EPC) 회원국	EU 회원국
운영 기관	EPO	EPO
특허권의 성격	지정국에서만 유효한 각각의 특허의 집합 (bundle)	EU 국가 전체에서 유효한 단일 특허 (IT, ES, CR 제외)
특허권 인정요건	EPO 등록 후 각국 특허청에 번역문 제출 및 등록	EPO 등록
번역 비용	EPC 회원국 등록시 각국 언어로 번역 비용 필요 (13개국 등록시 평균 번역비용 14,000유로 소요)	출원시 EU특허 공식언어로만 제출하면 충분 (번역비용 600~700유로 예상)

단일특허제도의 효과

- 보다 낮은 특허 획득 및 유지비용
 - 번역비용의 획기적 절감
- 보다 저렴한 특허 소송
- 특허소송절차의 조화
- 유럽 전역의 무효, 손해배상, 구제절차의 확립

특허 유지료의 80% 절감

2nd year:	35 EUR	11th year:	1 460 EUR
3rd year:	105 EUR	12th year:	1 775 EUR
4th year:	145 EUR	13th year:	2 105 EUR
5th year:	315 EUR	14th year:	2 455 EUR
6th year:	475 EUR	15th year:	2 830 EUR
7th year:	630 EUR	16th year:	3 240 EUR
8th year:	815 EUR	17th year:	3 640 EUR
9th year:	990 EUR	18th year:	4 055 EUR
10th year:	1 175 EUR	19th year:	4 455 EUR
		20th year:	4 855 EUR



통합특허법원

(Unified Patents Court)

통합특허법원 : 기본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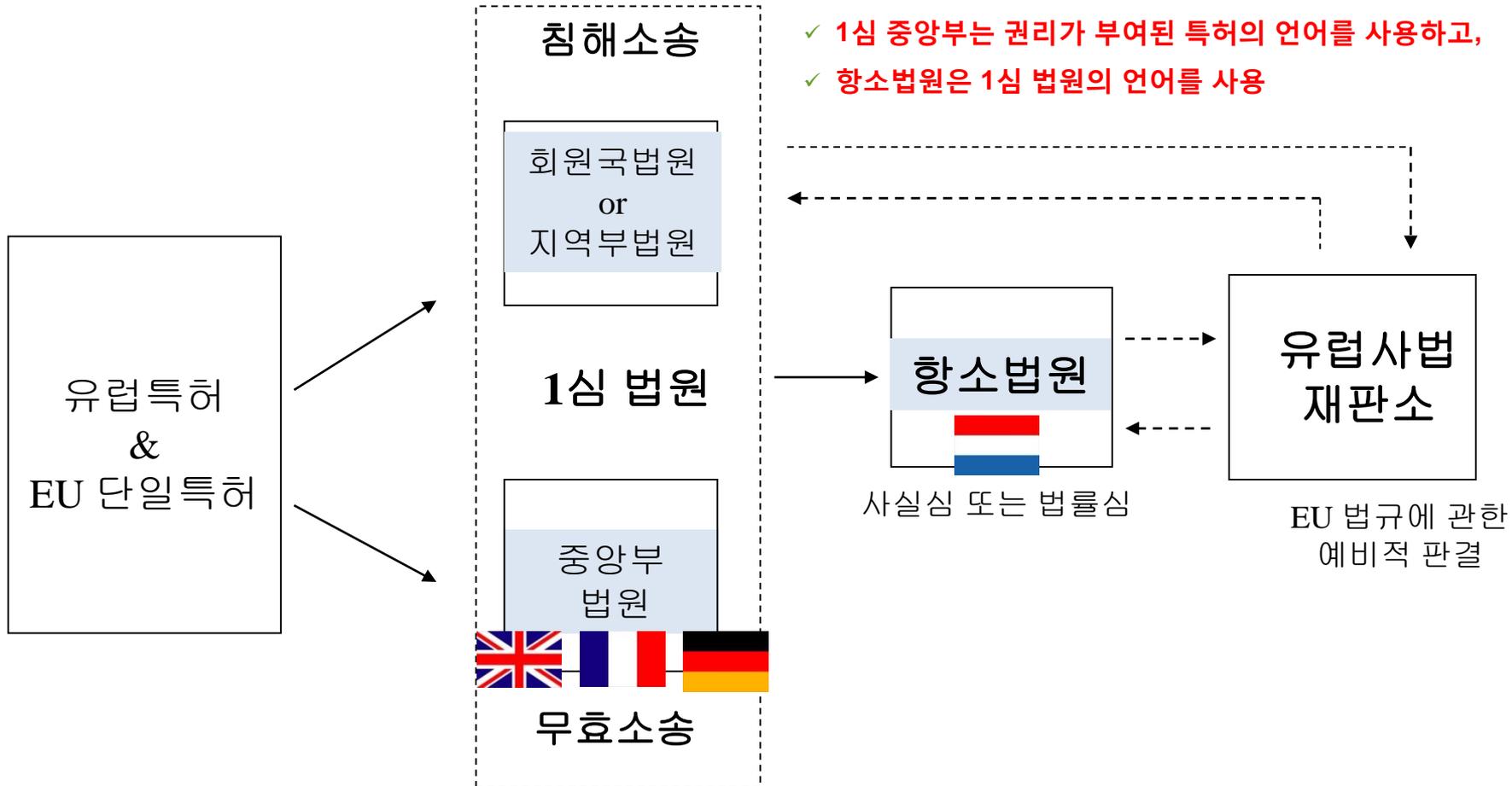
- 조약체결에 참여한 25개 회원국 간 공통법원, 유럽특허(European patents)와 EU 단일특허에 대해 전속관할권을 갖음
- 다만, 통합특허법원의 전속관할권은 7년의 전환 과도기(transitional period) 기간동안 유럽특허는 동 법원을 회피할 수 있음
- 통합특허법원은 EU 회원국 특허청에서 부여한 회원국 특허(national patents)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음
- EU 회원국들 중 ES, PL, HR는 동 조약에 불참

주요 법원 및 관련기관 설립지역

- ❖ 1심 법원(Court of First Instance)
 - 중앙부 법원(Central Division)
 - 파리
 - 런던 (화학& 바이오)
 - 뮌헨 (기계)
 - 회원국 법원(Local Division)
 - 지역부 법원(Regional Division)

- ❖ 항소 법원(Court of Appeal) (Art 4 & 7)
 - 룩셈부르크

통합특허법원의 심급 체계



- ✓ 소의 원인 자체가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무효소송은 중앙부에서 심리
- ✓ 회원국 법원 또는 지역부 법원에 제소된 침해소송에서 특허무효 항변이 있는 경우, 중앙부 법원에 회부 또는 직접심리

통합특허법원의 회피

- ❖ 기존 유럽특허(classical European patents)에 대한 전환기간 (Transitional period)
 - 통합특허법원 조약 발효 후 7년간, 기존의 유럽특허는 각 회원국 법원에 침해 또는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동 조약의 발효 이전에 출원되었거나 등록 결정된 유럽특허는 통합특허법원을 회피할 수 있음
- ❖ 따라서 기존 유럽특허의 특허권자는 통합특허법원이 정착기에 들어갈 때까지 판결을 주시하면서 통합특허법원 또는 회원국 법원을 선택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음

통합특허법원 시행 전망

- ❖ 통합특허법원협정 필수비준 3개국 프랑스, 영국, 독일을 포함,
13개국 비준 필요
 - 프랑스, 영국 비준 완료
 - 독일은 통합특허법원 비준법안 헌법소원 진행중(2017~)
- ❖ 올해중 독일 비준 완료시 2019년초 본격 출범 예상

Brexit and the Prospects on IP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jhwan112@korea.kr

Questions?

박진환

EU 특허관

jhwan112@korea.kr